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/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231호

시행일자 2018. 12. 11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5614(2018.12.11.)

2. 위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자의 판매가능 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(2017.9.7.~2018.6.30.)까지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나, 판매금지기간내 판매한 사실로 2018. 12. 14일자로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 처분된 아래 품목에 대하여, 건강보험 급여를 2018. 12. 14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제품명	제약회사명
피오스메트정 15/850밀리그램	(주)한국글로벌제약

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